

시민사회론의 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

이 영 재*

본 연구는 1990년을 전후로 하여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진보적 시민사회론의 논의 지평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사회가 계급적 차이와 진보적, 보수적 헤게모니가 공존하는 영역적 개념임을 전제할 때,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장구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민주화 운동 영역을 지칭하는 시민사회 개념과 최근 신사회운동을 매개로 진보의 저변을 확대해 가는 시민사회 영역에 주목하였다. 한국 시민사회의 진보적 재구축을 위해서는 신사회운동의 주제화와 더불어 구사회운동의 주요 주제였던 계급운동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민주적 제도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개념사와 영역에 대한 재구성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부르주아 일방의 영역이 아니라 계급적 갈등을 내재한 헤게모니적 쟁투장임을 이론적으로 전제하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매개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와 구별되는 시민사회론의 전개를 위하여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붕괴과정을 맑스의 저작을 통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경향의 범주를 넘어서는 시민사회론을 매개로 하여 전개될 수 있는 급진적 가능성에 대해 시론적 수준의 문제의식을 제출하고 있다.

주제어 : 시민사회, NGO, 제3섹터, 공론장

*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론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무렵이다.¹⁾ 서구 중심의 시민사회 논의가 우리 사회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논쟁의 화두는 첫째, 운동 주체의 선명성 논쟁이었다. 이는 1987년 확장된 정치적 공론장에 ‘민중운동’과 대비되는 ‘시민운동’을 표방²⁾하며 등장했던 ‘경실련’의 활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서구에서 도입된 시민사회론의 개념정립에 관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영역 구성, 이론사적, 개념적 논쟁이 쟁점이었다. 셋째는 서구 시민사회 논의의 한국적 대입의 문제였다.

우리의 시민사회 토양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다져지기 전에 촉발된 이론적 논쟁은 시민단체의 활성화 이후 오히려 그 열기가 식어버렸다. 우리 사회 대표적 시민운동 단체 활동가의 고백은 시민사회 논의를 둘러싼 이론진영의 한계를 정확히 짚고 있다.

이론진영이 시민운동을 여전히 정권과 자본의 이중대로 폄하해 버리거나 가만히 뒤도 안 돌아보고 있다고 방기해버리는 것은 상황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론진영의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발달고 선 사회적 지형

- 1) 유팔무. 1991.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의 문제.” 『경제와 사회』 겨울호; 김세균. 1992.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이론』 가을호; 강문구. 1992. “민주적 변혁운동 기반의 심화, 확장을 위하여: 김세균 교수의 ‘시민사회론’ 비판에 대한 토론.” 『경제와 사회』 겨울호; 김호기. 1993. “시민사회 논쟁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월간 『말』 1월호; 최장집·임현진 공편. 1993. 『시민사회의 도전』 나남;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 학술발표회 연구논문집. 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외에 수많은 논의들이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간되었다.
- 2) 서경석. 1995. “민중운동의 시대는 가고, 시민운동의 시대가 왔다.”; 경실련 편. “경실련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실련 창립 5주년 기념자료집』.

의 변화, 그것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고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홍일표 2001: 283).

이 고백은 뿌연 최루탄으로 뒤덮인 거리에서 나부끼던 깃발의 외침 이후 미처 주워 담지 못한 우리의 사회구조적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갈증이다. 최근 시민사회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 갈증은 아직 해갈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연구경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거시적 수준에서 이념적, 실천적 방향타의 역할을 자임했던 시민사회론이 시민단체에 대한 미시적 연구경향으로 대체³⁾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NGO⁴⁾’, ‘제3섹터⁵⁾’ 등의 개념 소개와 시민단체의 각종 지표에 대한

- 3) ‘시민사회론’과 ‘시민단체’, ‘NGO’, ‘제3섹터’에 관한 연구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마치 ‘의회민주주의’ 연구가 ‘정당’에 관한 연구와 동일하지 않은 것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를 국가 및 경제영역과 구분함과 동시에 ‘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시민사회는 친밀영역(특히 가족), 노동조합, 종교단체, 토론클럽, 시민포럼,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운동, 공적 소통 등이 관통하는 개인적 권리를 포함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와 저항권 등으로 구조화된 영역적 개념이다.
- 4) NGO(또는 NPO)는 시민사회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일체의 자발적인 공적 결사체(voluntary civil associations)를 통칭한다(김상준 2003: 31).
- 5) ‘제3섹터(The Third Sector)’는 비교적 최근 우리 사회에 소개된 용어이다. ‘제3섹터’는 NGO보다는 시민사회의 영역적 개념에 근접한 개념이다. 주성수는 ‘제3섹터’를 시민사회와 동의로 사용하기도 한다(주성수 2000: 19 이하 참조.) 하지만 ‘제3섹터’ 역시 시민사회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 싶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비영리(non-profit)’ 섹터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영국에서는 부정어법 사용을 꺼리는 관례로 ‘자원섹터(voluntary sector)’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또한 제3세계 국가의 경우는 ‘비정부’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러한 차이들을 기드론(Gidron)과 살라몬(Salamon)등이 통칭하여 정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조직들을 ‘자원섹터’ 혹은 ‘비영리섹터’보다 ‘제3섹터’로 통칭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용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시장과 국가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무수한 기관단체들을 통칭한다. 즉 이들은 엄밀하게 정부기관들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도 아닌 기관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Gidron, B. Kramer, M. & Salamon, L. 1993.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 in Welfare States*, San Francisco: Jossey-Bass. 참조. 여기서는 주성수 2000: 43-44.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보듯이 ‘제3섹터’ 역시 국가와 경제적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기관과 단체를 통칭하는 개념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3섹터, 또는 비영리조직, 제3부문의 개념과 정의,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Helmut K.Anheier & Wolfgang Seibel의 *The Third Sector: Comparative Stud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를 번역한 노연희 2002: 417-432. 참조.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으나, 시민사회를 매개로 하는 우리 사회의 진보적 대안 제시는 뚜렷한 이론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⁶⁾ 필자는 우리 사회와 같은 시민사회론의 재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둘러싼 한국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서구 중심의 시민사회 논의를 한국적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접목할 경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빌려 입은 모양이 될 것이고, 한국적 특수성만을 강조할 경우 시민사회론이 갖는 긍정적 성과물에 대한 배척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수성'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 제도의 구조화 과정과 강권적 정치권력의 경험을 지칭한다. 현대 서구 민주주의에서 법과 제도는 사회적 관계의 체계모니적 쟁투 과정을 매개하며 사회적 안정화와 통합의 기제로 간주된다. 동시에 법과 제도의 구조화 과정은 해당 사회의 중요한 민주적 학습경험의 축적을 수반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의 '주체'와 '영역'을 제도적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 즉 시민적, 정치적 시민권의 발달과정이 위로부터 일거에 주어짐으로써 생략되어 있다. 노동자, 노예, 여성, 빈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획득, 즉 시민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주체의 정치적 평등 쟁취투쟁으로

6) 여기서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시민사회가 진보적·정치적 경향만이 아닌 보수적·비정치적 경향이 깊숙이 길항(拮抗)하면서 맞물려 작용(김상준 2003: 22)하는 체계모니의 각축장이라는 사실이다. 시민사회, NGO개념을 둘러싼 배타적, 분할적 경향에 대한 김상준의 문제제기는 시민사회를 진보적·정치적 담론만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규정하는 경향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장구한 권위주의 민주화 투쟁을 경험한 사회에서 해방과 민주 상징으로 표방된 민주화운동 영역, 재야 영역, 사회운동 영역이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엽부터 '시민사회'로 통칭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자리잡았다(김상준 2003). 이 글에서는 시민사회를 그 자체 진보적 영역 일반으로 가정하는 배타적 논의 경향에 대한 김상준의 비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진보적' 논의의 공공적 이슈화를 매개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진보적 시민사회 부문이 논의의 주요 대상임을 미리 밝혀둔다. 시민사회가 부르주아 일방의 영역이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평등 확대 이후 계급적 각축이 전개되는 영역임을 추적하고 있는 '2. 시민사회의 근대적 확대: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전환' 참조.

요약되는 시민혁명의 경험이 우리 시민사회에는 축적될 수 없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제도적 기반이 ‘주체’ 없이 형성된 채 주체의 진입을 기다린 셈이었다.⁷⁾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는 서구와 달리 헌법적 가치의 강권적 유린에 대한 ‘수호’ 투쟁의 경험이 녹아 있다. 우리 사회는 총, 칼을 앞세운 불법적 집권에 대한 저항사를 민주화 경험의 중요한 가치로 내장하고 있다.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에 대한 ‘기동전’적인 공격 패턴 하에서 국가를 중심에 두는 이론적, 실천적 경향이 강하게 자리잡았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이 ‘법’과 ‘권리’의 이해에 있어 서구 선진국과 차이를 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당한 정치권력 유지의 갑옷으로 둔갑하여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략한 법과 제도에 대

7) 파슨스가 사회공동체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기초로 민주혁명과 나란히 발전해 온 시민권 개념을 지적(Parsons 1971: 92)하고 있듯이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발전사는 오늘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기반의 형성사를 보여준다. 마샬은 시민권을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진화론적 발전경로로 파악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치적 권리의 민주적 평등의 잠재력에 대한 마샬의 우려이다. “시민권의 정치적 권리는 시민적 권리와 달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가득하다. 조심스럽게 투표권을 사회의 하층으로 확산시켰던 사람들은 아마 그 위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폭력적인 유혈혁명 없이도 얼마나 광범위한 변화가 정치권력의 평화적인 사용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노동조합은 정치적 시민권을 보충하는 것으로 제2의 산업적 시민권의 체계를 창출했다(Marshall 1964: 23).” 자본주의의 옹호론으로 귀결되는 마샬적 의미의 시민권 논의와 달리 만(M. Mann)과 터너(B. Turner)는 새로운 관점의 시민권 이론을 제안한다. 만은 마샬의 진화론적 시민권 논의와 상반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만은 대표적인 국가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개혁주의적, 권위주의적 군주정, 파시스트적, 권위적 사회주의의 시민권 특성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만은 마샬의 분석이 자민족 중심적이며, 진화론적이기 때문에 지배-전략적 테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Mann 1987: 63-75). 터너는 마샬에 비해 사회 운동과 공론장의 동학을 강조하는 논의를 전개한다. 터너는 시민권의 발전을 공적, 사적 영역으로 분리하고, 아래로부터의 관점과 위로부터의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위로부터 발전되는 소극적 차원의 시민권과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적극적 차원의 시민권을 구분함으로써 각 나라별 정치영역의 특성을 역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Turner 1990: 189-217). 우리 사회의 경우 굳이 분류를 하자면, 만의 지배전략테제에 입각한 위로부터의 시민권부여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한 기억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적 실천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성 하에서 활성화된 공론장을 생명으로 하며, 토론과 합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서구 시민사회의 전략적 실천기획(시민불복종)⁸⁾이 막바로 한국 시민사회의 방향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의 영향은 시민사회 자체를 체제 순응적 부르주아들의 고상한 운동 영역으로 전략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담론의 장벽자체를 ‘재산권’의 신성함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정치적 영향력 자체를 반편화시켜 놓았다. 우리 사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의 자유주의가 특수하게 변형된 사례이며, 서구의 보편적 이념형으로서의 자유주의적 가치는 우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서구 자유주의에 근접한 형태로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존재한다.⁹⁾ 하지만 여기서는 역으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적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는 한에서, 또한 시민사회를 시장 또는 경제영역과 동일한 영역으로 구성하는 한에서,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의 발전 이후 시민사회의 주체는 경제적 영역의 불평등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 정치적 영역의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을 담지한 경제적 행위 주체이자 정치적 행위주체인 근대의 시민은 바로

8)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불복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오현철 2001 참조).

9) 서구와 한국의 자유주의를 보편과 특수로 파악하는 담론의 논리는 사대적인 서구중심주의일 뿐만 아니라, 관념상의 자유주의의 일반형을 가정하는 - 비록 그 논의들이 서구 자유주의 역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자신이 상정한 자유주의의 일반적 이념형의 지적 계보 속에서만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 관념적이며 비역사적인 것이다(박주원 2003: 136).

동일한 주체¹⁰)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의 영향 탓인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과 보수언론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경제적 영역과 관련한 문제들은 공론장의 정치적 주제로 부상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임금협상은 이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¹¹)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순간 공적 논의의 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개인과 사주의 사적 관계로 전락하여 공론장에서 밀려나곤 한다.¹²)

이러한 상황적 이해하에서 본 연구는 1990년을 전후로 하여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진보적 시민사회론의 논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시적 차원의 연구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가 시민사회론의 축적된 연구성과 덕분일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시민사회를 둘러싼 거시 논쟁의 부분은 많은 과제

10) 정치적 공론장의 담지자인 정치적 시민(*Staatsbürger*)과 사회적 시민(*Gesellschaftsbürger*) 사이에는 개인적 동일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동자와 소비자, 피보협자와 환자, 납세자와 국가관료제의 서비스 수혜자, 학생, 여행자, 통근자 등의 보충적인 역할 속에서 이 역할에 상응하는 행동체계의 특정한 요청과 실패에 특별한 방식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선은 '사적으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서, 공유된 생활세계의 맥락 안에서 다른 생활사들과 얽여 있는 하나의 생활사의 지평 속에서 해석된다(Habermas 1996: 365).

11) 노동3권은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노동자의 단결의 필연성을 법적으로 시인, 보장함으로써 상품거래시장에서 노동자를 일반시민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끌어 올려 놓으려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인령, 1985.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 이영희, 1990.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까치. 참조.

12)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1년 단기 순이익의 1.5배 ~ 2.5배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경영진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경영진들,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원 정도의 배당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500억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일겠는가 ...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만 21년. 그런데 한달 기본급 105만원. 그중 세금들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80몇 만원. 근속 연수가 많아질수록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할텐데, 햇수가 더할수록 더욱 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나, 노동자는 다 굶어 죽어야 한단 말인가(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의 크레인 위에서의 유서(2003. 9. 9.) 중).

를 미해결 상태로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앞서 제시한 주체의 선명성 논쟁은 우리 사회 운동의 패러다임 독해와 관련한 문제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 신사회운동¹³⁾적 패러다임이 사회의 곳곳에서 주체화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와 공론장이 민주적 제도 구축 자체를 문제삼아야 할 만큼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현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는 신사회운동과 구패러다임의 동시병행, 즉 다양한 부문별, 주제별 운동과 더불어 계급적 불평등의 완화 내지는 지양이 구체적 수준으로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주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⁴⁾ 또한 진보적 시민사회의 기획은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제도적 보장의 차원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도기적 과정이 꼭 서구 시민사회 수준까지 발전하기 위한 경로, 즉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적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도기적 과정은 서구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시 말해 직접 정권을 겨냥하는 기동전에 입각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 민주화 투쟁의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한국적 특수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개념사와 영역에 대한 재구성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부르주아 일방의 영역이 아니라 계급적 갈등을 내재한 근대적 합의의 헤게모니적 쟁투장임을 이론적으로 전

13) 신사회운동이란, 지난 1970-1980년대에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새롭게 등장한 환경, 평화, 여성, 연대, 반문화, 동성애, 반핵, 녹색당 운동 등 기존의 사회운동 영역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사회운동을 지칭한다(김호기 2001: 71).

14) 김상곤은 21세기 사회운동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포괄적 다층적 민주주의 전선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진보적 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전술을 공동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새로운 통합지향의 사회운동”으로 명명한다(김상곤 2003: 411). 필자는 이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영역이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따로 분리된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바로 시민사회의 영역을 관통하는 문제라고 본다.

제하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매개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와 구별되는 시민사회론의 전개를 위하여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붕괴과정을 맑스의 저작을 통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미시적 연구경향이 미처 담보하지 못했던 측면, 즉 시민사회론을 매개로 하여 전개될 수 있는 급진적 가능성에 대해 비록 투박하나마 시론적 수준에서 문제의식을 제출하고 있다.

2. 시민사회의 근대적 확대 :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전환

국가와 분리된 근대적 시민사회 개념은 헤겔의 『법철학』(*Rechtsphilosophie*)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헤겔을 통하여 오늘날 자연스럽게 분리하여 사용하는 ‘국가’와 ‘사회’의 근대적 구분이 이론적으로 종합된다.¹⁵⁾ 『법철학』에서 헤겔은 근대 세계가 함축하고 있는 시민생활과 정치적 생활의 명백한 이원성을 밝힘과 동시에 어떻게 정치적 삶과

15) 킨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가 Paine, Thomas. 1776. *Common Sense*, Philadelphia. 에서 나타난다고 본다(Keane 1988a: 36ff). 국가와 사회의 분리가 드러나는 최초의 논의를 페인의 「인간의 권리」로 보는 것은 적절할지 모르나 페인의 「인간의 권리」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는 역사적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이상적인 상태에서 그려지고 있음을 볼 때 헤겔에서 그 이론적 종합이 완성된다는 코헨과 아라토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첫째, 헤겔은 자연법 전통을 이어받고, 칸트에게서 권리의 담지자이자 도덕적 양심의 행위자라는 개인의 보편적 정의 개념을 이어 받는다. 둘째, 그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침투도 포함하는 방식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계몽적 구분을 일반화한다. 셋째, 퍼거슨(Ferguson, A.)을 차용하고 물질적 시민화의 지점과 수행자로서 시민사회에 대해 강조하는 정치 경제학을 차용한다(Cohen&Arato 1992: 91-92).” 특히 리델(Riedel, M.)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정치학적 형이상학의 거대한 전통이 국가를 시민사회로 기술한 반면, 헤겔은 국가의 정치적 영역을 이제 ‘시민적으로’된 ‘사회’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여기서 ‘시민적’이라는 표현은 그 어원적 의미와는 반대로 우선 ‘사회적인’ 내용을 지니게 되고, 18세기 무렵처럼 ‘정치적’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일은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Riedel, M. 1969: 55-57)” 밝히고 있다.

사회적 삶의 통일이 근대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밝히고 있다. 헤겔은 각각의 영역에서의 주체, 즉 가족에서는 가족원, 시민사회에서는 ‘시민’(Bürger, Bourgeois), 정치적 국가에서는 ‘공민’(Staatsbürger, Citoyen)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헤겔은 개인적인 요구와 이익이 타인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인간의 사회적 삶의 국면을 나타내기 위하여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헤겔의 시민사회 주체는 개인적인 요구와 이익, 즉 사적 요구에 따르는 Bourgeois¹⁶⁾이다. 헤겔은 공적영역과는 거리가 먼 사적영역의 범주에 시민사회를 위치시킨다.

시민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이며, 시민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Hegel 1967: 189) …… 이것은 경제적 생활영역이며, 그 사회의 조화는 정치경제학의 법칙으로 표현되고, 그 사회의 내용은 이기적 목적의 추구이다(Knox 1967: 354).

헤겔의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 개념은 오늘날 공적영역을

16) bourgeois와 citoyen의 구분은 의미가 있다. bourgeois는 사사로운 사적 이해에 입각하여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사인’(私人)으로 ‘시민’(市民)을 지칭하고, citoyen은 국가의 일반적 이해에 입각하여 국가 속에서 공적 생활을 영위하는 정치적 양식을 지닌 구성원으로서 ‘공민’(公民)을 가리킨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근대민주주의는 이 공민을 토대로 정립·발전되나, 이 공민 개념이 붕괴되고 그 자체 ‘대중’으로 변질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대중민주주의’로 넘어 가기 때문이다(Riedel 1969: 59. 역주 24). 참고로 Civil은 Bürger(bourgeois)와 Staatsbürger 즉, citoyen의 의미를 양의적으로 갖는다. 따라서 Civil Society는 bürgerliche Gesellschaft와 Zivilgesellschaft 또는 Zivile Gesellschaft의 두 가지 개념적 의미를 내포한다. Civil Society에 대한 반노동적, 반민주적 비판 경향은 bürgerliche Gesellschaft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Habermas, 1961.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영역판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역자 Thomas Burger의 Translator’s Note와 xvii. 참조.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관계를 망라하는 자유주의적 Civil Society 또는 헤겔적 ‘bürgerliche Gesellschaft와 구별하기 위해 근대 독일 좌파 이론가들은 이 그림자적 ‘시민사회’ 개념을 Zivilgesellschaft(또는 Zivile Gesellschaft)라는 신조어로 표기하고 있다(황태연 1996: 40). “신자유주의자들은 Civil과 Bourgeois의 동일성을 재차 확증한 속에서, 재산을 가장 중요한 지위에 위치시키지 않는 권리들의 모델을 두려워한다. 당연히 이들은 사회의 정치화를 거부하며 국가의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하는 사회운동의 형식을 거부한다(Cohen&Arato 1992: 75).”

구성하는 시민사회(*Zivilgesellschaft* 또는 *Zivile Gesellschaft*)와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헤겔적 ‘시민사회’ 개념은 저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의 개념적 원조로 자리잡으면서 시민사회의 왜곡된 이해에 일조하였다. *bürgerliche Gesellschaft*에 대한 교정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맑스에게서 결정적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

맑스의 시민사회를 헤겔과 같은 의미의 *bürgerliche Gesellschaft*로 보거나 경제적 토대로부터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영역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맑스의 ‘근대적’ 시민사회 분석은 헤겔과 엄연한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맑스의 저작에서 *bürgerliche Gesellschaft*라는 용어가 헤겔적 의미에 가깝게 사용되는 경우는 헤겔리안과의 논쟁에 들어 있는 1844년 이전의 저작에 한정된다.¹⁷⁾ 맑스는 정치적 차원의 평등이라는 근대적 함의를 프랑스 혁명에서 도출하고, 신분제 체계(*estate system*)와 대의제 체계(*representative system*)를 구분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헤겔의 신분제 의회를 중세적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한다.¹⁸⁾

중세적 의미의 신분개념은 프랑스혁명을 통하여 변화하였다. 시민

17) 맑스는 헤겔을 비판하기 위해 대략 1844년까지는 헤겔적 의미의 *bürgerliche Gesellschaft*를 사용하고 있지만, “The German Ideology”(1846a)를 거쳐 “Marx to Annenkov”(1846b)에서는 시민사회를 헤겔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이는 “유행하는 오해와 달리 “Prefac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1859)에서 재차 확증된다.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맑스는 *bürgerliche Gesellschaft*를 인용부호 속에 넣어 사용하고 있다(황태연 1996: 40).”

18) 정치적 신분들을 사회적 신분들로 전환시켜 온 것은 역사적 진보이다. 마치 기독교인이 천상(heaven)에서는 평등하지만 지상(earth)에서는 불평등한 것처럼 국가의 개별 성원들은 그의 정치적 세계의 천상에서는 평등하지만 사회의 지상적 현존재에서는 불평등하게 된다. 정치적 신분들의 시민적 신분들(civil estates)로의 진정한 전환은 절대군주제 아래에서 일어났다. …… 다시 말해 프랑스혁명이 시민사회의 신분 구별을 단지 사회적 일뿐인 구별들로, 즉 정치적 생활(political life)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시민적 생활(civil life)의 구별들로 만들어 버렸다. 정치적 생활과 시민사회의 분리가 이것에 의해 완성되었다(Marx 1843a, CW3: 79-80).

사회내 신분은 정치사회와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였다.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치적 ‘평등’을 규정하는 형식적 진보가 관철됨으로써 근대적 시민사회를 재구성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성원은 그의 신분으로부터, 즉 현실적인 사적 지위로부터 자유롭다. 정치적 차원에서만 그는 인간 존재로서의 중요성을 획득한다. 또는 국가의 성원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질, 즉 그의 인간적 특질을 획득한다…… 이전의 영역들 안에서 이미 현존하던 신분들의 구별이 정치적 영역에서 의미를 갖지 않는다(Marx 1843a, CW3: 81).

하지만, 맑스는 정치적 영역만의 형식적 평등을 ‘집의 기등을 그대로 둔 혁명’으로 은유하고, ‘시민사회의 일부분’¹⁹⁾이 보편신분으로 화(化)한 부분적 혁명이라 말한다(Marx 1843c: 184). 여기에서 집의 기등은 경제영역의 불평등을 암시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일부분’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일부를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의 시민사회 개념은 부르주아만의 시민사회, 즉 *bürgerliche esellschaft*와 구별된다. 단, 맑스는 아직까지 프롤레타리아트를 시민사회내의 보편적 신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당시 부르주아는 피지배 계급들에게 시민적(정치적 및 사회적) 제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한정적으로만 인정했다. 부르주아의 정치적 계급 독재시기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시민사회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었다. 따라서 맑스는 “유일하게 특징적인 것은 무소유성 및 직접적 노동의 신분, 구체적 노동의 신분은 시민사회의 한 신분을 형성하기보다 오히려 근거(ground)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활동한다는 점뿐(Marx

19) ‘part of civil society’; 이는 시민사회 내에 부르주아 이외의 다른 신분들이 있음—대표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가—암시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Civil War in France*에서 나타난다.

1843a: 80)”이라고 말한다. 이 당시 프롤레타리아는 시민사회의 기본권을 향유하지 못했다.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맑스는 ‘부르주아 계급’만의 시민사회를 ‘지양’할 주체로 프롤레타리아트를 등장시키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보편적 역할을 경제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해방의 가능성은 인간의 완전한 상실태이고, 따라서 인간의 완전한 회복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획득할 수 있는 한 영역의 형성에 있다. 이 같은 사회의 해체를 체현한 특수한 신분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이다(Marx 1843a, CW3: 186-187).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이끌어진 인민대중이 보통 민주주의 및 정치사회적 인권과 시민권을 유혈쟁취한 이후 부르주아적 시민사회의 발전은 피지배 계급의 부단한 유혈투쟁에 힘입어 계급독재적 한계를 넘어 추동되었고, 이리하여 시민사회의 부르주아 독재적 형태는 점차 부르주아 헤게모니 형태로 대체되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시민사회는 한낱 부르주아의 ‘독점회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가 결정적인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 피지배계급들의 복합적인 유혈투쟁의 역사적 성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황태연 1996: 64).

3. 공적-사적영역의 매개로서 시민사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맑스의 시민사회는 (토대가 아닌!) 상부구조의 또 다른 영역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맑스는 안네클프(P. W. Annenkow)에게 보내는 장문의 프랑스어 서한(1846. 12. 28)에서 ‘시민사회’(*société civile*) 개념을 경제적 토대와 구별되는 ‘사회적’ 상부구조의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맑스는 프루동이 역사발전에 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것의 형태가 어떠한 사회란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상호행위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이러 저러한 사회의 형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간의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수준을 전제한다면 당신은 그에 조응하는 교류 및 소비의 일정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생산력, 교류, 소비의 일정한 발전 단계를 전제한다면 당신은 그에 조응하는 사회적 제도, 그에 조응하는 가족조직, 신분조직 또는 계급들의 조직, 한 마디로 상응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 société civile)를 갖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 저러한 ‘시민사회’를 전제한다면 당신은 한낱 시민사회의 공식적 표현일 뿐인, 이에 조응하는 ‘정치적 체계’(political system, 불어판, ‘정치적 국가’, état politique)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프루동씨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것입니다²⁰⁾

‘맑스의 시민사회’를 토대와 동일시하는 오해와 달리 또 다른 상부구조로서 시민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정확히 그람시로 연결된다. 특히 맑스로부터 그람시로 이어지는 시민사회 논의의 흐름은 그 동안 간과되거나 헤겔의 시민사회와 등치되는 등 이론적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²¹⁾ 그람시는 상부구조를 강제의 영역인 좁은 의미의 국가

20) Marx, K/ Engels, Friedrich. 1985. *Über "Das Kapital": Briefwechsel, ausgewählt und eingeleitet von Hannes Stambraks*, Berlin. 국역은 김호균 역. 1990. 『자본론에 관한 서한집』, 중원, p.51/ 황태연. 1994. 345., 1996. 38-9.를 보기 바람. 여기서는 Marx 1846b, CW38: 96에서 인용.

21) 국내에서는 황태연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에 대비되는 진보적 시민사회 논의의 전개는 상당부분 황태연. 1992.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 1996. 『지배와 이성』, 창작과 비평사.에서 차용한 것이다. “헤겔류의, 부르주아 학자들의 시민사회는 17세기 부르주아 경제학자 및 법철학자들의 이론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토대와 국가로부터 공히 구분되는 시민사회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폴리스 개념을 원조로 하여 근세 초 아담 퍼거슨에 의해 최초로 이론화된 시민사회 개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맑스에게서는 이 두 가지 상이한 시민사회 개념이 모두 등장하는데, 그는 두 개념의 이러한 내용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술어

(정치사회)와 ‘사적’이라 불리는 유기체들의 총체인 ‘시민사회’로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주요한 상부구조의 ‘수준들(levels)’을 고정하는 것이다. 그 하나는 ‘시민사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즉 흔히 ‘사적’이라고 불리는 유기체들의 총체와 다른 하나는 ‘정치사회’ 혹은 ‘국가’로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수준은 한편으로 지배 집단이 사회 구성구석에서 행사하는 ‘헤게모니’ 기능과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 ‘법률상의’(juridical) 정부를 통해 행사되는 ‘직접적인 지배’나 통치 기능에 조응한다(Gramsci 1983: 12).

그람시가 이렇게 상부구조를 국가와 시민사회로 구분한 것은 부르주아 지배가 단순히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해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뿌리 내린 다양한 제도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갈파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 부쳐”와 연결될 수 있는 바, 맑스는 “자연과학적 정확성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생산조건들의 물질적 변화와 구분지어 법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또는 철학적 형태, 즉 인간이 이러한 대립을 의식하게 되는 터전이자 또한 싸움으로 이 대립을 관철해 나가는…… (Marx 1859, CW16: 474-475)” 여러 상부구조적인 생활과정을 나열하고 있다. 인간들은 사회적·정신적 의사소통의 ‘법률적·정치적·종교적·예술적 또는 철학적 형식’ 등으로 생활과정의 문제들을 의식하고 이 문제들과 투쟁한다는 이 테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국가제도는 경제적 토대에 의해 단순히 인과적으로 또는 목적론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규정된 형성물이 아니라, 험난한 투쟁과 간주체적 소통의 복합적 중첩과 교차의 산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황태연 1996: 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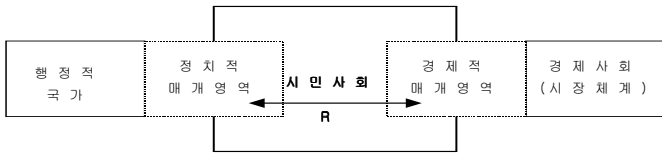
시민사회를 좁은 의미에서 행정적 국가의 외부에, 그리고 경제적 과

적 빈곤으로 인해 모두 *bürgerliche Gesellschaft*로 표기하고 있다(황태연 1996: 38).”

정의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적 생활과 동일시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이다.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삼분론은 분석적 분류로 이해되어야지 배타적 분류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현실에서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첩적이며 탄력적인 연관관계에 있다(김상준 2003: 20). 시민사회를 정치제도, 특히 의회와 같은 정치적 공공영역과 생산과 분배로 구성되는 기업이나 공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사회와 구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근대 시민사회를 보증하는 권리들의 구조물들-정치적 권리와 노동 기본권 등-과 함께 정치·경제적 영역과 관계를 맺는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은 직접적으로 권력에 대한 정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²²⁾에서의 제약 없는 논의(discussion)와 민주적 결사(association)들을 통하여 영향력을 산출한다. 경제사회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관계를 맺는다(Cohen & Arato 1992: ix-x). 시민사회는 국가와 경제에 직면한 연대성의 형식이 되고 자율성을 갖는다(같은 책: 30). 이렇게 시민사회를 개념 규정할 경우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코헨과 아라토는 시민사회의 제도적 영역들에 주목하면서 권리의 복합체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림>에서 R은 권리를 나타낸다. 첫째,

22) 독일에서 오래된 형용사 ‘공공적’이라는 *öffentlich*로부터 *publicité*와 *publicity*와 유사하게 그것의 명사형 *Öffentlichkeit*이 형성된 것은 비로소 18세기에서였다. 공공적인 것과 공공적이지 않은 것, 즉 ‘사적’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완전히 발전된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자유시민에게 공동된(*koine*) 폴리스 영역은 모든 개인에게 고유한(*idia*) *Oikos*영역과 분리되었다. 공론장은 논의(discussion)와 재판의 형태를 띠는 수도 있는 대화(*lexis*)를 통해 구성되거나, 전쟁수행이나 전투적 놀이도 될 수 있는 공동 행위(*praxis*)를 통해 구성되었다. (입법작업을 위해 종종 외지인(strangers)을 초청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 입법은 공적인 과제가 아니었다). 이후 중세 전체에 걸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범주가 로마법의 정의에 존속하였으며, 공적 영역(public sphere)은 *res publica*로 이해되었다. 이 범주들은 근대국가와 부르주아 사회의 영역이 출현할 때 즉 부르주아 공론장의 정치적 자기이해와 법적 제도화에 기여한다(Habermas 1989: 3-5).



문화적 재생산과 관련된 권리로 사상, 언론, 표현, 소통의 자유가 있고, 둘째,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을 확보할 권리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고, 셋째, 사회화를 보장하는 권리로 프라이버시, 친밀성, 개인의 불가침성에 대한 보호가 있다. 이와 구분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시장경제와 근대 관료제적 국가 사이를 매개하는 권리가 있다. 재산권과 계약, 노동권이 경제체계와 관련된다면, 정치적 시민권과 복지권은 정치체계와 연관을 맺는다(Cohen & Arato 1992: 441).

시민사회는 ‘공간적²³⁾’, ‘영역적’ 개념으로 ‘시민운동’, ‘시민단체’, ‘NGO’, ‘생활세계’ 등과 이론적 전제 없이 등치되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시민사회는 역사적 경험과 전통적 가치의 저장소로서 생활세계를 배후에 두며,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언론·표현·소

23) 여기서의 ‘공간적’(spatial)이라는 개념은 아렌트의 정치관을 ‘공간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정치가 말을 매개로 다원적 인간들 ‘사이(between)’의 공간’에서 현상하는 의견들의 교환이라는 공간적 정치관은 아렌트 공화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다. 루소와의 높은 사상적 친화성에도 불구하고 아렌트가 루소식의 ‘일반의지’는 인간의 다원성과 다원성이 발휘되는 공간을 배제한다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렌트 정치관에 포함된 이러한 공간성을 파악해야 한다 ... 이 정치적 공간을 창출하고 유지시켜 주는 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사람들이 함께 행위할 때 이들 사이(공간)에서 생겨났다가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어떤 것이다(정윤석 2000: 283).”

통의 자유, 노동권, 정치적 시민권, 복지권, 저항권 등 법,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근대적 권리들에 기반하며, 사법적, 행정적 권력에 대한 사회 보편적 타당성의 경보장치로서, 또한 입법영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이다.

시민사회는 자기 운동력을 갖고 자기 결정적인 형식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사회적 차이를 안정화시키는 법(특히 개인적 권리)을 통하여 제도화되고 일반화된다. 시민사회의 자기 운동력은 사회보편적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존립의 근거를 확보하고, 공론장의 개입을 시도한다. 반면,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정체 하에서 시민사회는 기본권의 확보와 법과 제도,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민주화 투쟁의 과정과 나란히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가는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4.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 비판: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상호침투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을 목표로 삼는다(Bobbio 1990: 12). 공화주의적 차원에서 국가 또는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자유를 포착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적 차원에서는 국가 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차원의 자유²⁴⁾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시민의 지위는 마치 사인들처럼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의 모델로 규정²⁵⁾된다(Habermas 1996: 281).

24) 벌린(Isaiah Berlin)의 분석에 따르면, 토글빌 역시 자유의 개념을 주로 소극적, 부정적으로 이해했다.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해 유일한 최선의 판단자이며 사회는 그에 의해서 해를 입거나 그의 행동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존 스튜어트 밀에게 있어서도 자유의 개념은 각 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자기 방식대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강정인 1993: 70ff).

25) 법질서에 있어서도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주관적 권리로부터 출발하여 구성됨

피트킨에 따르면, 정치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이며, 평등하고, 공공 정신에 의해 발양되고 다른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그들의 관심과 추구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인간 상호간의 활동(Pitkin 1972: 208)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견해는 민주적 과정을 단지 국가를 사회의 이익에 맞게 프로그래밍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공적인 행정기구를, 사회는 사인들 및 그들의 사회적 노동의 시장-경제적으로 구조화된 교류체계를 의미할 뿐이다(Habermas 1996: 279-280).

자유주의적 논의 경향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획을 중시한다. 특히 사적 영역의 소유권은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사인의 권리로 현상한다.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최소국가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자 노직(Nozick)이나 근대적 이성의 보편적 가치마저도 구성주의적인 것으로 배척하는 극단적 자유주의자 하이예크(Hayek)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치참여의 협소함²⁶⁾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향의, 불복종 등 민주적 제도에 대한 타당성 준거를 시민사회 내에서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치전략의 인식은 도구적 정치관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강정인 1993: 227). 도구적 정치관은 고정된 자기 이익의 관념을 고집한다. 정치참여의 기능은 단순히 개인으로 하여금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견지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민주주의는 사적 이익을 집성하는 수단으로 자리한다. 정치 개념을 이처럼 이해할 경우

으로써 권리와 의무의 상호준중을 요구하는 권리의 상호주관적 내용을 놓치게 된다(Habermas 1996: 282-283).

26) 하이예크와 더불어 흔히 시장자유주의로 분류되는 시카고 학파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정치적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전체이익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하이예크가 민주주의적 과정 자체가 진정한 합의로 수렴되는 힘을 아예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김균 1997: 33).

온전한 합의의 민주적 정치개념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치 참여의 기능은 자유주의적 정치관에서처럼 정치권력을 시야에서 제거하거나 관념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적 제도들에는 배제된 사람들의 포용에 대한 희망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결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활기찬 시민사회와 역동적인 공론장을 먹고 산다. 주변화된 층을 정치적 공동체 속으로 포용하여,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되돌려주기 위해선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이 나와야만 한다.²⁷⁾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은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구획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정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상호침투(mutual infiltration)하고 교차한다. 생활세계 또는 사회의 구석 구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주목하고, 논의하며, 공적 이슈의 담론으로 전환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작동원리라고 한다면, 결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관문을 닫혀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되며, 더욱이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휘광 아래 ‘자본관계’로부터 기인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공적 논의의 장으로부터 배척되어서도 안된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유동적 관계에 대한 단초는, 사라진 ‘공적’ 세계, ‘행위’의 세계를 동경하는 푸념일 수 있으나, 아렌트²⁸⁾에게서 찾

27) Habermas, 1992. *Faktizität und Geltung*의 한국어판 출판을 기념하는 하버마스의 서문 중, 한상진, 박영도 공역. 1999. 『사실성과 타당성』, p.7.

28) 아렌트에게 ‘공적’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능한 가장 폭 넓은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론영역에서는 보고 듣기에 적절한 그리고 그럴 가치

아 볼 수 있다. 아렌트는 근대의 공론영역이 본질적으로 돈에 의한 객관성으로 전도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적 찬사와 돈을 통한 보상이 본질적으로 등치되며,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다. 공적 찬사의 생산과 소비가 매일 같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용성으로 인하여 가장 무용한 금전적 보상이 오히려 더욱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Arendt 1989: 57).”

아렌트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조변화를 인지하였다. 아니 오히려 ‘사회적인 것’²⁹⁾에 의한 공적 영역의 침식을 목도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렌트는 모든 발전단계에서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근대사회를 인식한다. 사회는 각 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한 행동을 기대하며, 수많은 규칙들을 부과한다. 이것들 모두는 구성원을 ‘표준화’시켜 행동하도록 하는 경향성을 가지며 자발적인 행위나 탁월한 업적은 갖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아렌트의 비판은 마치

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이 공적인 빛을 견딜 수 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사적인 문제가 된다. ‘공적’인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것이고, 우리의 사적인 소유지와 구별되는 세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것은 차라리 인간이 손으로 만든 인공품과 연관되며, 인위적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과 관계한다(Arendt 1989: 50-52).

29)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을 ‘사회적 동물’로 옮긴 세네카의 번역에서부터 문제를 삼는다. 그녀는 Social이라는 단어는 로마어에 어원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어나 그리스의 사상에는 이에 해당하는 낱말이 없다고 강조한다. “라틴어 *societas*의 용법은 본래 제한적이긴 하나 분명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범죄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드는 경우처럼 *societas*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동맹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스 사상에 의하면, 정치적 조직체를 갖출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그 중심이 가정(*oikia*)과 가족인 자연적 결사체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립되어 있다. 폴리스의 발생은 인간이 “사적 생활 외에 일종의 두 번째 삶인 정치적 삶을 부여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제 모든 시민은 두 가지 존재의 질서에 속하며, 그의 삶에서 자신의 것(*idion*)과 공동의 것(*koinon*) 사이에는 예리한 구분이 있게 된다.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동렬에 세운 오해는 그리스어 용어들이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것들이 로마-기독교 사상에 적용된 것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아렌트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근대에 들어와 특히 사회의 근대적 개념에서 다시 한번 더 결정적으로 복잡해진다. 사적영역과 공론영역이라는 단순한 구분은 가정과 정치적 영역의 구분에 상응하여, 이 두 영역은 고대 도시국가가 발생한 이래로 뚜렷이 구별되는 실체로서 존재해왔다(Arendt 1989: 23-25. 참조).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문화산업테제」를 연상시킨다. “어떤 상황에서든 사회는 평등화의 경향을 보이는데, 근대 세계에서 평등의 승리는 사회가 공론 영역을 정복했으며, 그 특성과 차이는 이제 개인의 사적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만 정치적, 법적으로 인식시켜주는 사태일 뿐이다(Arendt 1989: 41).”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처럼 거처를 상실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아렌트에 따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의미 역시 변했다.³⁰⁾ 이처럼, 아렌트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였지만, 그것은 시민사회를 매개로 하는 긍정적 관점에서라기 보다는 공적영역의 소멸이라는 극히 비관적 차원에서였다. 맑스가 사적 소유의 절대화로 인한 인간 소외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대안을 제출하였다면, 아렌트는 공적영역, 즉 세계 자체의 소멸을 추적하며 ‘인간’의 거처가 상실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상호침투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에서 다루어진다. 특히 하버마스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조적 변형의 과정으로부터 부르주아 공론장의 소멸을 검토함으로써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30) 사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우정과 달리 공적으로 드러나는 한 끝나거나 없어진다. ‘작은 것’에 대한 근대인의 기쁨, 즉 사적인 것의 확대, 다시 말해 온 국민이 일상 위에 퍼뜨린 마력은 이제 사적인 것(기쁨)이 공적으로 되어 공론영역을 구성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공론영역은 국민의 삶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으며, 곳곳에서 위대성이 아니라 무아경과 마력이 위세를 떨치게 된다(Arendt 1989: 51-52). 아렌트가 문제삼는 것은 ‘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순응주의와 동질화를 획책하는 ‘사회적인 것’이다. 아렌트의 논의속에 사적인 것은 ‘박탈’이라는 어원적 함의를 갖지만, 그녀는 사적인 것을 공적 영역을 위해 희생시켰던 그리스인들과 달리 두 영역이 공존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로마인들의 정치적 감각에 후한 점수를 주었다(Arendt 1989: 58ff. 참조).

상호침투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가와 사회 사이에, 말하자면 양자로부터 재정치화된 사회영역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구별로부터 벗어난 영역이다. 또한 이 영역은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이 그들 상호교류의 일반적인 관심사를 규제하는 사적 부분의 특유한 부분, 즉 자유주의적 형태의 공론장을 해체한다. 그 정치적 기능의 변화에서 입증되는 공론장의 몰락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관계의 구조적 변형 일반에 그 원인이 있다(Habermas 1989: 142).

하버마스는 국가제도와 사회제도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라는 기준으로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는 하나의 단일한 기능복합체로 결합됨에 주목한다. 이러한 현상은 곧 고전적 사법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국가의 구조를 갖는 산업사회에서 사법제도나 공법제도 어느 하나에 완전히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과 관계들이 증대된다. 오히려 이것들은 이른바 사회법적 규범의 도입을 강제한다.³¹⁾ 하버마스는 이를 단적으로 ‘사법의 공법화(Publizierung)’, ‘공법의 사법화(Privatisierung)’라고 표현한다. 이제 사적인 것이 공적영역을 침투하여 공적 논의의 중요 대상이 된다.³²⁾ 그 매개 영역이 바로 시민사회이다.

부르주아적 자유주의가 그토록 강조했던 사적영역의 재산권 역시 더 이상 신성의 영역³³⁾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³⁴⁾ “소유권은 이미

31) 공법의 요소들과 사법의 요소들은 알아볼 수 없고 풀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맞물리게 되었다(Habermas, 1989: 149).

32) 아렌트가 공론장과 사적영역의 근대적 관계를 고대적 관계와 달리 ‘사회적’인 것의 발생으로 특징지을 때, 그녀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공적으로 중요하게 된 사회의 사적 영역을 의미한다. “사회는 인간이 동류 인간들과 맺는 의존관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위해서만 공적 의미를 갖는 공동생활의 형식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지 삶의 유지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공론장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공적 공간의 외모를 규정할 수 있다” Arendt, 1960. *Vita Activa*, Stuttgart, p.43. 여기서는 Habermas 1989: 19에서 재인용.

33) 고대사회에서 토지소유권 개념은 부락 주민 전체의 총유(總有) 관념으로 인식되었다. 중세봉건 제도의 확립과 함께 토지소유권 개념은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영유

언급한 경제정책적 간섭에 의해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전형적 사회 상황에서 상대방의 형식적 계약평등도 실질적으로 원상 복구해야 할 법적 보증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전형적으로 노동법에서 나타나듯이 개인계약을 대신하는 집단계약은 약한 상대방을 보호한다(Habermas 1989: 149).” 경제적 영역으로 한정되어 욕구의 체계, 이기적 목표의 추구로 점철되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와 구분되는 시민사회는 바로 경제적 영역의 불평등을 문제삼을 수 있는 정당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있는 영역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바이마르공화국 헌법³⁵⁾을 아쉬워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시민사회와 공론장에서 수정, 교정이 가능³⁶⁾한 주제이다. 우리 헌법도 재산권은 보장하되

권)과 그 이용권인 분할소유권으로 분리되었다. 즉, 관리처분권은 영주에게, 그 이용권은 예속 영민에게 귀속되었다. 봉건사회의 붕괴 후 (절대주의를 거치면서-인용자) 성립한 근대시민사회는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자로 관념하고 절대적인 소유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이것을 배경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생산과 부의 비약적 증대를 이루었다. 근대 초기자본주의 하에서 토지소유권의 개념은 개인적 재산권으로서 절대적사권(絶對的私權)으로 존중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은 1789년 불란서(프랑스-인용자)인권선언 제17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규정으로 표현되었다(88월가13, 1989. 12. 12. 368-369).

- 34) 생산자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분리, 19세기 산업자본주의에 의해 완성된 계급관계는 자본가와 임노동자 사이의 형식적으로 평등한 법적 관계를 사실적 예속관계로 전환시켰다. 이 예속적 관계의 사법적 표현이 준공권력을 은폐하고 있다. 칼 렌너(Karl Renner)는 사법의 중심제도인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와 그것의 연관 보증물들, 즉 계약, 영업, 상속의 자유를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것들이 그 실질적 기능에서 볼 때 공법의 구성요소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Renner, K. 1929. *Die Rechtsinstitute des Privatrechts und ihre Funktion*, Tübingen, 2. Aufl. 여기서는 Habermas 1989: 149에서 재인용. 아렌트 역시 사적 소유의 신성한 엄호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 ‘소유’와 ‘부’가 동일시되고 이것들이 공론영역으로 들어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원래 소유는 세계의 특정 부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조직체에 소속되는 것, 즉 공적 영역을 구성하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Arendt 1989: 61).
- 35)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헌법 제153조는 ‘소유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소유권은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대한 봉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6)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해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라고 하여 법률로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2항)고 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다(88헌가13, 1989. 12. 12. 371). ‘근면함’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상태를 가정하고 ‘시민’ 대부분을 게으른 조상의 자녀로 규정짓는 구성적 논의는 극복 가능한 하나의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5. 한국적 시민사회론의 과제와 전망

‘취루탄’과 ‘바리케이트’로 상징되는 ‘기동전’적 잔영이 선명히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갖는 이념적 대립을 차치하고 본다면, 주체의 호명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인민’, ‘중민’, ‘민중’, 또는 ‘노동자’가 ‘시민’임과 동시에 정치적 평등권을 향유하면서 시민사회의 공간을 버젓이 구성하는 주체라는 점이다. 이러한 주체들에 의해 구성되는 시민사회는 18세기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획득한 정치적 평등의 확대를 통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제도적으로 구획된 영역에서 소통적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연대성을 발현하는 공간적 개념이다. 또한 계급적 헤게모니의 각축이 전개되는 영

있다는 이상이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도시노동자나 소작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계약 자유의 미명하에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계층간의 분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대폭 수정되기에 이르렀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서는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었으니 …(88헌가13, 1989. 12. 12. 369-370).

역이기도 하다.

한국적 특수성의 경험 하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 시민사회가 갖는 과제는 다중적 양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사회운동의 새로운 이슈나 서구의 시민불복종 논의 등에만 기대기에는 우리의 시민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리 녹녹치 않다. 사회운동 자체가 계급운동에 의해 주도되었던 구패러다임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신사회운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하나의 경향적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서구의 국가에서조차 여전히 '자본관계'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또는 해결의 문제는 비껴갈 수 없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서구의 신사회운동에 비견되는데, 서구에서 신사회운동은 계급적 대중운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계급적 대중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제도화를 배경으로 하여 출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회운동은 반독재투쟁을 주도하던 민중운동과는 이슈, 참여자, 가치와 목표, 활동양식, 지향 등에서 다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합리화된 국가와 제도 정당의 '관료화'에 대항하는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달리, 한국의 시민운동, 특별히 종합적 시민운동은 국가와 제도정당의 합리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근대적'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사회운동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조희연 2001: 301).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시민사회론은 서구 시민사회가 갖는 실천적 전략을 수용함과 동시에 여전히 형성중인 시민사회의 민주적 제도화의 기반 구축까지 주제로 삼아야 한다.

강문구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시민운동이 왜 민주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체되고 허약한가? 하는 자문을 던진다. “독재정권과 강성국가 때문에? 고질적인 지역주의 때문에? 이런 국

가권력·지역주의 문제는 이제 시민사회의 병약성과 너무 깊이 연루되고 착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얘기하기는 힘들다(강문구 2003: 309)”고 말한다. 강교수는 국가권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시민운동의 구축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바로 그 오래된 착종의 관계를 재편하는 과제가 동시병행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구축은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시민사회의 재구축을 위해서는 구운동 패러다임에서 미해결된 채 남아 있는 요소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제에 대한 연계적 실천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서구 시민사회론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다른 차원으로는 우리 사회만의 과제가 주제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공론장의 민주적 재구축에 대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공론장에는 조선, 중앙, 동아를 위시한 보수-반공-극단적 자유주의 경향의 신문 공론장과 더불어 온전한 토론과 합의를 가로막는 지역, 계급 담론이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까지 문제삼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 진보진영의 정치적 요구를 제도 영역에서 대변하는 정당이 이제 초보적 단계³⁷⁾이고, 계급적, 계층적 요구를 담보하는 신문이나 여타 매체가 변변하게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면 공론장의 민주적 재구성은 공정한 룰을 위한 선행작업이다. 다양한 관점의 제출과 사회적 합의를 그 근원부터 제한하는 극우과시즘적 색깔론, 지역과 성, 학맥 등에 의한 차별, 노동운동에 대한 선입견 등을 공론장으로부터 축출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상적 대화상황’은 차치하고, 공정한 논의 구조를 위협하고, 사회보편적 이성을 마비시키는 민주주의의 저해요소들에 대한 정지작

37)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광. 2003. “‘진보정당’과 새로운 정치지형의 가능성” 참조.

업이 없다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략의 상은 사법적, 행정적 권력으로 전환하는 소통적 권력의 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보편적 가치, 즉 평등, 평화, 인권, 환경 등의 이슈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여성단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법·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사례나 인권단체의 오랜 투쟁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등은 긍정적 사례³⁸⁾가 될 것이다. 일단, 제도적 보장의 단초가 마련된다면, 접점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둘째, 위 문제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권리 투쟁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실천적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법 또는 권리의 관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민사회 운동 자체를 제도적 영역 내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근대적 법의 가치에 주목한다면 그 전망이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³⁹⁾ ‘시민운동’과 ‘법’은 어느새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시민운동’과

38) 이외에 행정상의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부패방지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설치된 것도 그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과거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부당한 정치권력의 행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이 설치된 것 역시 과거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회적 명예회복 압력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적으로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률에 의한 유죄판결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이 진행되는 현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바로 우리 사회의 체계모니적 대답은 참여한 형태로 시민사회와 공론장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39) 전근대적 의미에서 법이 지배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지배자의 혈통적 정당성과 이미 주어진 법 질서의 해석 또는 주술의 권위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이제 신성화된 법의 탈가가 붕괴된 지금 근대적 입헌국가로의 전환은 이제 법에 이 중적 요청을 한다. 근대적 입헌국가는 국가의 도구적 차원에만 법을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를 정의의 원천으로 두게 되었다(Habermas 1996: 146ff. 참조) 이제 법은 자신의 고유 기능을 넘어 정치권력과 정당성을 상호 전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체 민주적 정의의 원천으로 기능한다.

‘법’이라는 두 단어의 접촉면은 매우 넓어지고 다양해 졌다.⁴⁰⁾ 권리투쟁을 사회변혁의 동인으로 보는 보울스(Bowles)와 진티스(Gintis)의 경우 민주주의적 권리의 확장투쟁을 통하여 투자와 생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면 착취와 소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986: 166ff).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개혁의 문제를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포괄하기 시작하는 논의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핵심은 사회적 권리의 확보와 관련한 방향제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다양한 ‘차이’(difference)의 사회적 승인을 위한 ‘포용(inclusion)의 정치’가 필요하다.⁴¹⁾ 이 사안은 비단 서구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둘러싼 보편적 문제이다. 공론장의 의사소통 채널은 사적인 삶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Habermas 1996: 365). 자칫 사적 삶의 주제와 요소들이 공론장에서 ‘차별’로 전환되는 것을 방조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시민사회와 공론장에 기반하는 소통적 권력은 정치적, 경제적 영역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인간의 귀속적 정체성에 호소함으로써 ‘차이’가 정치, 경제적 차별로 전환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40) 첫째, ‘시민자치’의 이념을 제도화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 시민참여 제도들이다. 이것은 현행 제도상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두 번째, 시민의 힘으로 법률을 만드는 입법운동이다. 세 번째, 시민운동이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시민운동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제도들이다(하승수 2001: 367-368).

41) 차이의 문제가 서구 선진사회에서나 주제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포착할 수 있는 시민사회(또는 민주주의)의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는 이남석, 2001, 『차이의 정치: 이제 소수를 위하여』, 책세상. 참조. 최근 이남석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정치철학적 정당화’에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이남석 2003 참조).

참고문헌

- 강문구. 1992. “민주적 변혁운동 기반의 심화, 확장을 위하여: 김세균 교수의 ‘시민사회론’ 비판에 대한 토론.” 『경제와 사회』 겨울호.
- _____. 2003. 『한국민주화의 비판적 탐색』, 당대.
- 강정인. 1993.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비판적 고찰』, 문학과 지성사.
- 김 균. 1997. “하이에크 자유주의론 재검토: 자생적 질서론을 중심으로.” 김 균 외. 1997. 『자유주의 비판』 풀빛.
- 김상근. 2003. “민주화 이행과 한국 사회운동”,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민주주의는 종료된 프로젝트인가』 이후.
- 김상준. 2003. “시민사회, 그리고 NGO·NPO의 개념: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NGO학, 과연 생산적인가?』(나무를 심는 사람들, 시민의 신문, 홍사단 주최 제6회 메타사회운동토론회 자료집).
- 김세균. 1992.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이론』 가을호.
- 김호기. 1993. “시민사회 논쟁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월간 『말』 1월호.
- _____. 2001. “신사회운동과 한국의 시민운동.”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 박주원. 2003. “한국의 자유주의: 빈곤인가, 과잉인가?”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상반기호.
- 서경석. 1995. “경실련 5주년의 평가와 전망.” 경실련 편. 경실련 창립5주년 기념자료집.
- 신인령. 1985.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
- 오현철. 2001. 『시민불복종: 저항과 자유의 길』, 책세상.
- 유팔무. 1991. “그람시 시민사회론의 이해와 한국적 수용의 문제.” 『경제와 사회』 겨울호.
- 이광일. 2003. “‘진보정당’의 새로운 가능성.”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민주주의는 종료된 프로젝트인가』 이후.
- 이남석. 2001. 『차이의 정치: 이제 소수를 위하여』, 책세상.
- _____. 200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치철학적 정당화를 위한 한 시론.”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치』(제1회 비판정치학대회 자료집).

- 이영희. 1990.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까치.
- 정윤석. 2000. “아렌트의 근대 비판과 새로운 정치의 모색.” 서울대철학사상연
구소. 2000. 『철학과 사상』 vol. 11.
- 조희연.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NGO 가이드』 한겨레
신문사.
- 주성수. 2000.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 출판부.
- 최장집·임현진 공편. 1993. 『시민사회의 도전』, 나남.
- 하승수. 2001. “시민운동과 법.” 조희연 외. 2001.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
사.
-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 학술발표회 연구논문집. 1992. 『한국의 국
가와 시민사회』, 한울.
- 헌법재판소. 1989.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권.
- 황태연. 1994.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
- _____. 1996. 『지배와 이성』, 창작과 비평.
- Anheier, Helmut K. & Wolfgang Seibel. *The Third Sector: Comparative Stud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를 노연희 역. 2002. 『제3섹터란 무엇인가』, 아르케.
- Arendt, H. 1989.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 Press.
- Bowles, S. & Gintis. H. 1986. *Democracy & Capitalism*, Basic Inc.
- Cohen, J. L. & Arato, A.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IT press.
- Gramsci. 1983.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 ed, Quintin Hoare & Geoffery
Nowell Smith,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Habermas, J. 1989. trans. by Thomas Burger,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MIT press.
- _____. 1996. translated by William Rehg,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MIT press.
- Hegel, G. W. F. 1821.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translated by, Knox,
T. M. 1967, *Hegel's Philosophy of Right*, Oxford University.
- Keane, J. 1988a.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 Keane, J. 1988b.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New
York: Verso.
- Mann, M. 1987. “Ruling Class Strategies and Citizenship” in edited by Bryan

- Turner and Peter Hamilton. 1994. *Citizenship I*, London: Routledge.
- Marx, K./ Engels, Friedrich. 1985. *Über "Das Kapital" : Briefwechsel, ausgewählt und eingeleitet von Hannes Skambraks*, Berlin. 김호균 역. 1990. 『자본론에 관한 서한집』, 중원.
- Marx. 1986. *Capital I*, Progress Publishers, Moscow.
- _____. 1843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law." 1975. *Karl Marx/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3., Progress Publishers, Moscow.
- _____. 1843b. "On the Jewish Question." CW 3.
- _____. 1843c.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law Introduction." CW 3.
- _____. 1846a. "The German Ideology." CW 5.
- _____. 1846b, "Marx to Annenkov." CW 38.
- _____. 1859.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CW 16.
- _____. 1871. "Civil War in France." CW 22.
- Riedel. 1969. "Der Begriff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und das Problem seines geschichtlichen Ursprungs." *Stud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 suhrkamp Verlag. 1962, Archiv für Rechts-und Sozialphilosophie, Bd. XLVIII. 황태연 역. 1983. 『헤겔의 사회철학』, 한울.
- Parsons, T. 1971.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Turner, S. 1990. "Outline of a Theory of Citizenship." *Sociology*, vol. 24.

